

도시관리계획(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00호(2022. 9. 29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7일
도 봉 구 청 장

- 가. 결정(변경) 취지
 - A-10 가구 내 도봉로변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.
- 나. 도시관리계획(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 - 1) 건축물 배치·형태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 - 가) 건축선 결정(변경) 조서
 -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적용지역	계획내용	적용기준	비고
기정	건축지정선	도봉로	•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지정선 지정	• 저층부(1~3층) 건축지정선 3m	
	건축한계선	방학로, 마들로	• 보행편의를 위해 건축선 후퇴	• 건축한계선 3~5m	
		구청사 남측	• 구청사부지와 인접블록간 선적 공개공지 조성	• 건축한계선 5m	
		이면부	• 차량 및 보행의 서비스활동 제고	• 건축한계선 1~4m	
		보차혼용통로 지정구역	• 보차혼용통로 공간 확보	• 건축한계선 6m	

구분		적용지역	계획내용	적용기준	비고
변경	건축지정선	도봉로	•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지정선 지정	• 저층부(1~3층) 건축지정선 3m	A-10 가구 제외
	건축한계선	도봉로	• 가로 미관 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	• 건축한계선 3m	A-10 가구
		방학로, 마들로	• 보행편의를 위해 건축선 후퇴	• 건축한계선 3~5m	
		구청사 남측	• 구청사부지와 인접블록간 선적 공개공지 조성	• 건축한계선 5m	
		이면부	• 차량 및 보행의 서비스활동 제고	• 건축한계선 1~4m	
		보차혼용통로 지정구역	• 보차혼용통로 공간 확보	• 건축한계선 6m	

■ 변경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건축한계선	• A-10 가구 내 도봉로변 건축지정선을 건축한계선으로 변경	• 가로 미관 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

나) 대지 내 공지 및 가로 통로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■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	계획내용	적용구역	비고
기정	전면공지	간선 도로변 (도봉로)	• 건축지정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•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,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•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	건축지정선 3m 보도부속형으로 조성
		그 외	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보·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• 주차장,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	보도부속형으로 조성
			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차량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	• 방학동 713-10, 713-44, 713-11번지 도봉로150바길 변 • 방학동 716-2번지 도봉로150다길 변	차도부속형으로 조성

구분			계획내용	적용구역	비고
			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	• 방학동 715-9번지 도봉로150바길 변 • 방학동 717, 718-30, 718-5번지 도봉로150다길 변	건축한계선 4m 중 도로변으로 2m 차도부속형, 나머지 2m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
변경	전면공지	간선 도로변 (도봉로)	• 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•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,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•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	건축지정선 및 건축한계선 3m 보도부속형으로 조성
		그 외	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• 주차장,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	보도부속형으로 조성
			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차량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	• 방학동 713-10, 713-44, 713-11번지 도봉로150바길 변 • 방학동 716-2번지 도봉로150다길 변	차도부속형으로 조성
			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•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	• 방학동 715-9번지 도봉로150바길 변 • 방학동 717, 718-30, 718-5번지 도봉로150다길 변	건축한계선 4m 중 도로변으로 2m 차도부속형, 나머지 2m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

■ 변경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전면공지	• 간선도로변(도봉로)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	• A-10 가구 내 도봉로변 건축지정선을 건축한계선으로 변경

다. 관계도서 : 붙임

※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.

라.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과(☎ 02-2091-3563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